

대구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가단1001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 8. 12.경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 8. 12. 경료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대여

(1) 원고는 2020. 12. 3. D과 사이에 대출금 2,200만 원을 대출기간 39개월, 대출이율 연 19.50%로 정하여 대여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돈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21. 8. 23. D과 위 대출약정에 기한 잔존 원금 19,973,433원에 대하여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7.50%로 정한 여신거래계약을 재체결하였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시 연 10.5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의 D에 대한 위 여신거래계약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2021. 1. 4. 기준 20,575,353원(= 잔존 원금 19,973,433원 + 잔존 이자 405,244원 + 지연손해금 196,676원)이다.

나. D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는 D의 아들이다.

(2) D은 2021. 8. 12.경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대출변제계약의 취소 및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모친인 D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함에 따라 2021년경 그 합계액이 9,842,003원에 이르렀고, 위 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해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받게 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D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를 채권자 중 일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대물변제계약은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약의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위 대출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대물변제를 받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명의이전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정

[별지]

목 록

1. 등 록 번 호 :
계 원 관 리 번 호 : A011-00031-3001-3117
차 명 : 불고 III1본
차 종 : 화물 소형
차 대 번 호 :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 D4CB / 2018
사 용 본 거 지(차고지) : 대구광역시 동구
등 록 연 월 일 : 2017-11-08

끝.

